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08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나1983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08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나168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가합5353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림기전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림기전개발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나16871 판결

판결선고 2014. 3.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665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6조 제2항은 "수급인의 도급이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고 한다)가 2008. 5. 29. 피고에게 인천 용현동 엑슬로타워 신축공사 중 일반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성 공사대금은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는 한편 "당사자는 위 내용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조건' 등에 의하여 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약정하였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조건 제20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그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은 풍림산업과 피고 사이의 위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정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풍림산업과 피고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외에 구체적인 지급기일을 특정한 적이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고 전제한 다음, 하도급법 제13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목적물 등의 수령일', 즉 피고가 풍림산업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날에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